

사옥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사옥관리규정 내 입찰성립요건이 상위법령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비해 엄격하여 입찰진행의 신속성을 저해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입찰 성립**

* 상위법령 및 사규 비교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2(입찰의 성립)	사옥관리규정 제 7조(사옥의 취득 및 처분절차)	
	종 전	변 경(안)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 단,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을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도 입찰 성립	· 유효한 2명 이상의 응찰자 중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매각	· (좌동) · 단, 「국유재산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사옥을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도 입찰 성립

사옥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옥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사옥을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도 입찰이 성립한다. 다만, 사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입찰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의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사유
제7조(사옥의 취득 및 처분절차) ①(생략)	제7조(사옥의 취득 및 처분절차) ①(현행과 같음)	
<신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사옥을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도 입찰이 성립한다. 다만, 사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입찰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찰성립요건을 1인 참여도 제한적으로 허용
② ~ ④(생략)	③ ~ ⑤(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